무배당 마이라이프상해보험 보통약관
보험계약의 체결

1. (보험계약의 성립)

①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우리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의 승낙으로 이루어 집니다.
②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보험료 전액 또는 제1회 보험료(일정기간 단위의 분할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하며, 통지가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증권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며, 청약을 거절한 때에는 납입한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 보험의 보장부분 예정이율+1% <연8%>의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③ 회사가 보험계약자로부터 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에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그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회사는 계약상의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4.에 정한 책임의 시기가 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 이미 성립된 계약을 연장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회사는 보험증권에 그 사실을 기재하거나 서면으로 알림으로써 보험증권의 교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청약서부본 및 보험약관의 교부)

① 회사는 계약체결시까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 청약서(이하청약서」라 합니다.) 부본 및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려 드립니다..
다만, 컴퓨터를 이용하여 보험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청약서 부본을 별도로 드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위 ①을 위반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이 보험의 약관대출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드립니다.

3. (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아래의 교통사고(이하 「교통사고」라 합니다) 또는 그 이외의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일반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생긴 손해(이하 「손해」라 합니다)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① 피보험자가 운행중의 교통승용구에 탑승하지 아니한 때, 운행중의 교통승용구(적재물을 포함합니다)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승용구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② 피보험자가 운행중의 교통승용구에 탑승하고 있을 때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 <용어풀이>
> 위 ①의 교통승용구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①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공중케이블카를 포함합니다),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칼레이터, 모노레일
> ②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 ③ 항공기, 선박(요트, 모타보트, 보트를 포함합니다)
> ④ 건설기계, 농업기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서만 사용되는 경우는 교통승용구로 보지 아니합니다)

② 위 ①의 일반사고로 입은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하게도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하였을 때에 생긴 중독증상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세균성 음식물중독과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4. (회사의 책임의 시기 및 종기)

① 회사의 책임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 오후 4시에 시작하며, 마지막날 오후 4시에 끝납니다. 이 경우 시각은 보험증권 발행지의 표준시에 따릅니다.
② 위 ①에도 불구하고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제1회 보험료를 받기 전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③ 위 ②의 보험료는 3.의 손해를 보상하는데 필요한 보험료(이하 「보장보험료」라 합니다)와 회사가 적립한 금액을 환급해 주는데 필요한 보험료(이하 「적립보험료」라 합니다)로 구성됩니다.

5.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② 보험수익자의 고의. 그러나 사망보험금보험수익자가 두사람 이상일 때, 다른 사람이 수취할 금액에 대해서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③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 (단, 형법상 정당방위,긴급피난 및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④ 피보험자의 뇌질환, 질병 또는 심신상실.
⑤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밖의 의료처치.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위험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⑥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에 입은 손해
⑦ 피보험자의 형의 집행
⑧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을 오르거나 특수한 기술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또는 이와 비슷한 위험한 운동
② 모타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 합니다)또는 시운전(단,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발생한 상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③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③ 피보험자가 아래에 열거한 행위를 하던중에 발생한 사고는 교통사고로 보지 아니합니다.
①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중의 교통승용구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발생된 사고
②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③ 교통승용구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사고

6. (계약전 알릴 의무)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의 기재사항에 관하여 아는 사실을 빠짐없이 그대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7. (모집인등의 청약서 임의기재행위의 효력)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서 작성시 반드시 기재사항을 사실대로 작성한 후 자필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합니다.
② 위 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모집인 등이 청약서에 질문한 사항, 기타 계약내용에 포함될 중요사항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와 다르게 기재함으로써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회사가 책임을 집니다.
③ 계약체결 당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 또는 날인하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자는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이 보험의 약관대출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드립니다.

8. (청약의 철회)

① 가계성보험 (개인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보험으로 보험료를 단체 또는 법인이 부담하지 않는 개인보험계약과 단체요율이 적용되지 않는 계약을 말합니다) 에 한하여 보험계약자는 계약의 청약을 한 날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15일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우편 철회의 경우 우편물이 회사에 도착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납입보험료 전액을 반환하며, 반환기일을 경과한 때에는 이 보험의 약관 대출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드립니다.

보험계약을 맺은 후의 변경

9. (계약후 알릴의무)

①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할 때(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② 회사는 위 ①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위 ①의 통지에 따라 보험료를 더 내야 할 경우, 회사의 청구에 대해 보험계약자가 그 지불을 태만히 했을 때, 회사는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요율(이하 변경전 요율이라 합니다)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후에 적용해야 할 보험요율(이하 변경후 요율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단, 변경된 직업 또는 직무와 관계없는 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아니하였을 경우 변경후 요율이 변경전 요율보다 높을 때도 전항과 같습니다.
⑤ 보험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가 알리지 않은 경우 회사가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는 보험계약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10. (계약내용의 변경) ① 보험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에 배서하여 드립니다.
① 보험종목
② 보험기간
③ 보험료납입주기 및 납입기간
④ 보험가입금액
⑤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
⑥ 기타 계약의 내용
② 회사는 보험계약자가 ①의 ①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개시일부터 1년이상 경과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보험종목의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변경하여 드립니다.
③ 회사는 보험계약자가 ①의 ④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약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보험계약자에게 드립니다.
④ 보험계약자 ①의 ⑤중 사망보험금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⑤ 보험계약자가 ①의 ⑤중 피보험자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1. (대표자의 지정)

①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 ①의 대표자로 지정된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1인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칩니다.
③ 보험계약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로 합니다.

12. (보험계약의 무효)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체결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단체가 규율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13. (보험료의 납입주기)

① 보험료의 납입주기는 연납을 원칙으로 하되, 보험계약자의 편의에 따라 일시납, 6개월납, 3개월납 또는 월납으로 할 수 있습니다.
② 제2회부터의 보험료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보험료 납입기간중 앞으로 납입할 보험료에 대하여 보험계약자가 서면으로 보험료 납입주기 및 수금방법의 변경을 요구할 경우에는 회사는 그 방법을 변경하여 드립니다.
③ 위 ②의 경우 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해 드립니다. 다만, 금융기관(우체국 포함)을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갈음합니다.
④ 보험계약자는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낼 수 있으며, 3개월 이상의 보험료를 미리 낼 때에는 이 보험의 예정이율<연7%>로 할인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계약이 보험기간중에 소멸 또는 변경되었을 경우에 선납보험료가 있으면 선납시에 할인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돌려 드립니다.

14.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① 15.에 규정된 납입최고기간이 경과되기 전까지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자동대출을 서면신청한 경우 30.에 규정된 보험계약자대출로 보험료가 자동적으로 대출되어 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② 위 ①의 규정에 의한 대출금과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일의 다음날부터 그 다음 보험료의 납입최고기간까지의 이자(약관대출이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를 합산한 금액이 당해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계산한 해약환급금과 기타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할 모든 지급금의 합계액에서 보험계약자의 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③ 위 ① 및 ②에 따라 약관대출로 자동납입되는 보험료는 1년을 최고한도로 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한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위해서는 보험계약자의 서면에 의한 재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④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행하여진 경우에도 자동대출납입전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계약자가 계약의 해약을 청구한 때에는 회사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없었던 것으로 하여 그 청구에 따라 처리합니다.

15. (보험료납입연체시 납입최고와 계약의 해지)

① 보험계약자가 제 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를 납입최고기간으로 하며, 회사는 ③에서 정한 바에 따라 최고하고 이 납입최고기간안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보험계약을 해지합니다. 납입최고기간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보험료 수금방법이 회사의 방문수금 또는 보험계약자의 은행 수납방법으로 약정되어 있는 경우에 회사의 방문수금불이행 또는 은행납입통지서의 미교부로 인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입기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를 납입최고기간으로 하여 위①을 적용합니다. 다만, 회사가 다시 수금하기로 하거나 은행납입통지서를 다시 교부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수금 또는 재교부일로부터 15일이 되는 날을 새로운 납입기일로 합니다.
③ 제 2회 이후의 보험료가 납입기일까지 납입되지 아니하여 보험료 납입이 연체중인 경우에 회사는 보험계약자(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 특정된 보험수익자 포함)에게 납입최고기간안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계약이 해지됨을 납입최고기간이 끝나기 15일이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알려주어야 합니다.

16. (해지계약의 부활)

① 보험료의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보험계약자는 해지일로부터 2년 이내에는 부활을 청구한 날까지의 연체보험료와 이에 대한 연체된 이자(보장보험료에 대해서 예정이율에 1%를 더한 이율<연8%>로 계산한 이자)를 내고 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계약부활에 따른 회사의 책임은 회사의 승인이 있는 날 오후 4시부터 시작됩니다. 이 경우 4. 및 6.의 규정을 다시 적용합니다.

17. (계약의 해지)

①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그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별표에서 정한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②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발생의 전후를 묻지 아니하고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회사가 안 때로부터

③ 위 ②의 ①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손해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 회사는 그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에는 별표에서 정한 해약환급금 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중 많은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④ 위 ②의 ②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손해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 회사는 그 손해를 9.의 ③에 또는 ④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⑤ 손해가 위 ②에 해당되는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닌 것으로 증명된 때에는 위③ 및 ④에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18. (무효 또는 해지인 경우의 환급)

① 회사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에는 이미 받은 보험료 전액을 돌려드립니다. 다만 계약이 회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무효가 된 경우에는 경과기간에 대하여 이 보험의 약관대출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② 회사는 계약이 효력상실되거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무효가 된 경우 또는 17. ②를 사유로 손해발생 이전에 해지된 경우에는 별표에서 정한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③ 【별표2】의 해약환급금중 적립부분(적립보험료에서 사업비를 공제한 적립순보험료를 말합니다)에 대하여는 회사의 책임개시일로부터 보험료 납입경과기간에 따라 아래의 이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보험기간중에 회사가 신용도가 높은 우량기업에 적용하는 대출금리(PRIME RATE, 이하 ▣우대금리¤라 합니다)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시점 이후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며, 최저보장이율은 6%로 합니다.

경과기간	적용이율
1년미만	우대금리 - 2.0%
1년이상 2년미만	우대금리 - 1.0%
2년이상 3년미만	우대금리
3년이상	우대금리 + 1.0%

19. (만기환급금의 지급)

① 회사는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완납하고 보험기간이 끝난 때에는 18.의 ③에 준하여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정해진 금액을 만기환급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이 약관에 정한 대출금이 있을 때에는 그 원리금 합계액을 빼고 지급합니다.

20. (환급금 등의 이자지급)

① 회사는 18.의 ②와 19.의 환급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로 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 보험의 보장부분 예정이율 +1.0%<연8%>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드립니다.
② 위 ①의 환급금등은 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리며, 회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경우에는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이 보험의 약관대출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드립니다.

손해의 발생

21. (손해의 통지)

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사고가 생긴 것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위 ①의 통지를 게을리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22. (보험금등 청구시 구비서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청구서(회사양식)
② 사고증명서(그러나 이를 얻기 어려울 때에는 사고발생의 목격자등 인근 주민의 확인서)
③ 그 밖에 필요한 증거자료

23. (사망보험금)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3. 의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아래에 정한 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보험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구 분	사 망 보 험 금
교 통 사 고	보험가입금액의 2배 해당액
일 반 사 고	보험가입금액 전액

②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 또는 선박이 조난 또는 행방불명되어 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정부기관이 피보험자의 사망을 인정하는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호적에 사망이 기재된 경우에는 그 사고가 발생한 때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사망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보험자의 생존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급한 사망보험금을 회수합니다.

24. (후유장해보험금)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3.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180일안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된 경우에는 [별표1】 각호에 정한 지급율을 보험가입금액(교통사고시에는 2배해당액을 말합니다)에 곱하여 후유장해보험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또는 성별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별표1】의 구분에 준하여 보험금의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별표 1]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지급율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④ 같은 사고로 두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때에는 그 각각에 대하여 위 ①,②,③을 적용하고 그 합계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별표 1]의 7, 8, 9에 언급된 상지(팔과 손) 또는 하지(다리와 발)의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한쪽 각각의 지급율은 60%를 한도로 합니다.

25. (보험금의 지급한도)
①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하나의 사고에 대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보험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의 2배액을 한도로 합니다.
② 회사는 하나의 사고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경우에 이미 지급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있을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을 뺀 잔액을 드립니다.

26. (보험금 등의 수령방법의 선택)
① 보험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후에는 보험수익자)는 보험금 또는 만기환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받거나 다음의 지급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① 일정기간 정기적으로 동일한 금액으로 분할지급
② 일정기간 정기적으로 동일한 금액으로 증액하여 지급하거나 동일한 비율로 증액하여 지급
③ 일정기간 경과한 후 이자와 원금을 일시금으로 지급
④ 일정기간 정기적으로 이자만 지급한 후 원금은 일시금으로 지급
② 위 ①의 경우 보험계약자의 요청에 의하여 보험금 또는 만기환급금의 지급방법을 변경한 경우에 회사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해서 예정이율＋1%<8%>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합니다.

27. (보험금의 지급)
① 회사는 손해발생 통지 및 22.의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①의 지급기일초과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유와 지급예정일을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서면통지하여 드립니다.

28. (보험금청구권의 상실)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손해의 통지 또는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에는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손해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을 상실합니다.

29. (손해보상후의 계약)
① 회사가 손해를 보상한 경우에 그 지급액이 한번의 사고에 대하여 해당 사망보험금의 80%해당액 이하인 때에는 남은 보험기간에 대한 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은 감액되지 아니하며, 80%를 넘을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② 위 ①에 따라 계약이 소멸된 때에는 그 때가지 회사가 적립한 적립부분의 책임준비금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밖의 사항

30. (보험계약자 대출)
①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회사에 제출하여 해약환급금의 범위안에서 회사가 정한 바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계약이 소멸되었을 경우에 위 ①의 대출금이 있으면 상환기일에 관계없이 지급할 금액에서 그 원리금을 뺍니다.

31. (보험계약자 배당금 지급)
회사는 이 보험에 대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32. (청구권의 소멸시효)
이 약관에 의한 보험금청구권과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의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소멸됩니다.

33.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장등의 효력)
모집인 등이 청약과정에서 사용한 보험안내장(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하여 만든 서류 등을 말합니다)의 내용이 이 약관의 규정과 다른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34. (계약내용의 교환)
개인에 대한 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활용하기 위해서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동의서에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서에 기재하는 제공할 신용정보의 내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 합니다.
① 보험계약자·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② 계약일, 보험종목,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 계약내용
③ 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액 및 지급사유 등 지급내용

35.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모집인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법규 및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36. (다툼의 조정)
이 계약의 내용 또는 보험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회사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기타 이해관계인과의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설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선택하는 대한민국내의 법원을 합의에 따른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39. (약관의 해석)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여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보험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40. (준거법)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무배당 마이라이프상해보험 특별약관

1. 뺑소니, 무보험자동차 상해 확대보상 특별약관

1. (보상하는 손해)
① 우리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일상생활 중에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한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위 ①의 뺑소니사고라 함은 피보험자가 보유불명의 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경찰관서에 뺑소니사고로 신고되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보유불명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③ 위 ①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라 함은 피보험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대인배상Ⅰ을 제외한 자동차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에서 보상받지 못하는 상해를 입음으로써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단, 가해 자동차가 2대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전부가 무보험자동차일 때에 한합니다.

2.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이 특별약관의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는 무배당 마이라이프상해보험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5.의 ①, ②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또한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영업목적으로 운행하던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도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3. (사망보험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위 1.의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추가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4. (후유장해보험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위 1.의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180일안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후유장해」라 합니다)된 경우에는 [별표1] 각호에 정한 지급율을 위 3.의 사망보험금에 곱하여 추가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18.에서의「별표2」는「별표3」으로 대체됩니다.

2.의료비담보 특별약관

1. (보상하는 손해)
①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무배당 마이라이프상해보험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3.에서 정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의사의 치료를 받은 때에는 1사고마다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증권에 기재된 의료비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의료실비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소요된 의료실비를 한도로 합니다.
② 위 ①의 비용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계약에 대하여 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위 ①의 비용을 초과했을 때, 회사는 이 보험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의료비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2.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18.에서의「별표2」는「별표4」로 대체됩니다.

3.임시생활비지급 특별약관

1. (보상하는 손해)
①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무배당마이라이프상해보험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3.에서 정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일로부터 180일을 한도로 입원1일에 대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일당액을 임시생활비로 이 특별약관에 따라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위①의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동일한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 수를 합산합니다. 다만, 최종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입원한 경우에는 새로운 입원으로 간주하여 보상하지 아니 합니다.

2.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18.에서의 「별표2」는「별표6」으로 대체됩니다.

① 제1종단체(급여관계단체) : 단체의 소속원이 그 단체로부터 일정한 급여를 지급받는 관공서, 국영기업체, 기업체 및 공장 등의 단체
② 제2종단체(법정단체) : 제1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민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조합등의 단체
③ 제3종단체(규약단체) : 제1종 및 제2종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이 규칙 또는 정관등에 의하여 확정되어 있는 단체. 그러나 단순히 보험가입을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② 보험계약자는 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 내지 단체의 소속원으로 합니다.
③ 이 특별약관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단체에 소속된 피보험자수가 최초 계약시 5인 이상(이하 「피보험자단체」라 합니다)이거나 단체에 소속된 보험계약자수가 최초 계약시 5인이상(이하 「보험계약자단체」라 합니다)이어야 합니다. 또한, 단체 소속원의 배우자, 자녀 또는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를 피보험자로 할 수 있습니다.

2. (대표자의 선정)
단체의 대표자 또는 직책상 대표자를 대리할 수 있는 자 및 위 1.의 ②에서 정한 보험계약자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합니다.

3. (피보험자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① 단체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를 증가, 감소 또는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또는 위 2.에서 정한 대표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그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② 회사의 책임은 회사가 승인한 이후부터 시작되며 회사가 승인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위①의 서면이 회사에 접수된 때를 승인한 때로 봅니다.
① 피보험자단체계약은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 감소시에 당해 피보험자의 계약을 해지된 것으로 하며,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되는 피보험자의 보험기간은 이 계약의 남은 보험기간으로 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변경된 보험료를 받고, 추가 또는 환급되는 책임준비금은 받거나 돌려 드립니다. 다만, 피보험자 증가나 교체시에 회사가 받아야 할 책임준비금차액이 발생한 경우 회사의 책임은 책임준비금을 정산한 후 변경된 보험료를 납입하는 날로부터 시작합니다.
② 피보험자단체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증가 또는 교체될 경우에 암과 같이 면책기간이 있는 담보에 있어서는, 피보험자 증가시에는 책임준비금을 정산한 날로부터 또는 변경된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면책기간이 적용되며, 피보험자 교체시에는 회사의 승인일로부터 면책기간이 적용됩니다.
③ 보험계약자단체계약은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수의 감소시에 당해 피보험자의 계약을 개별계약으로 전환하여 드립니다.
③ 위 ①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회사는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되는 해당 피보험자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4. (적용보험료)
① 보험계약자수 또는 피보험자수가 5인이 이상인 경우에는 단체취급보험료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②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수가 감소하여 5인 미만이 된 때에는 위 ①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이후 피보험자수가 증가하여 5인 이상이 된 때에는 다시 위 ①을 적용합니다.
③ 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경우에는 단체별 위험률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출·적용하거나 단체의 평균연령 또는 평균급수를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5. (보험료납입)
① 보험료는 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와 우리 회사가 정한 날에 일괄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급여이체 및 자동이체로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에는 일괄납입으로 봅니다.
② 회사는 납입보험료에 대한 영수증을 대표자에게 교부합니다. 다만, 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이거나 보험계약자단체인 경우에는 피보험자별로 납입증명서를 발행하여 드립니다.

6. (특별약관의 소멸)
① 다음중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이 특별약관은 당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속단체를 이탈하였을 때
② 보험료를 일괄하여 납입하지 아니하였을 때
② 위 ①의 규정에 의하여 이 특별약관이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는 단체취급보험료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7. (적용특칙)
이 특별약관에서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2조(보험계약의 무효)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만 보험증권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별로 보험증권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8. (준용규칙)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5.보험료자동납입 특별약관

1. (보험료 납입)
① 보험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부터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계약자의 거래은행 지정계좌를 이용하여 보험료를 자동납입합니다.
② 위①에 의하여 제1회 보험료의 납입방법을 보험계약자의 거래 지정계좌를 통한 자동납입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 회사는 청약서를 접수하고 거래은행의 지정계좌로부터 제1회 보험료가 이체된날을 청약일 및 제1회 보험료납입일로 하여 보통약관의 1.(보험계약의 성립)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2. (보험료의 영수)

4.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